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관한 기초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명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 규정 등〉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11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6.
3. 회부연월일 : 2024. 1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관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여러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요 정책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치안 제도 확립과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2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시·도조례로 정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지역치안의 확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경찰의 사무) ① (생략)	제4조(경찰의 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② ----- ----- ----- -----
<후단 신설>	--. 이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③ (생략) <u><신설></u>	<u>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u>제27조의2(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등)</u> <u>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협의 및 공동 협력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둘 수 있다.</u> <u>②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

현행법(이하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사무와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치경찰사무 범위 설정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치안 제도의 체계화와 주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먼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기에 앞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운영의 핵심 주체로서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걸쳐 협의·조정·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례 제정 시 동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또한,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 체제로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지방자치의 측면에서도 이미 다수의 시·도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법안 심사 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일한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¹⁾에 대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① 현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 ② 기초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의견 역시 함께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음.

<21대 국회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견>

구분	주요 내용
① 부산	<현행 유지> 필요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서 시·도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는 것이 타당
② 울산	<수정 의견>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와 함께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청취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조례로 정한다"로 수정
③ 충북	<현행 유지> 필요시 시·도지사는 재량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법률상 의무 규정으로 정할 필요는 없음. 또한 시·군·구마다 치안여건이 다를 수 있고 각각 다른 의견을 낼 경우,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
④ 제주	<수정 의견> 제주도에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으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내용이 명확해 지도록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로 수정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져야 하므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해당 지역 내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장 등 경찰기관장의 의견도 함께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632호, 이 해식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사무 범위 관련 조례 중 시·도경찰청장 의견청취 규정>

구 분	시·도
들어야 한다 (6)	부산,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청취한다 (9)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북, 제주(청취하여야 한다)
기타 (2)	인천(협의절차를 거친다), 강원(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관련 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각 목 생략)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 조례안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표준 조례안」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광역시장, ○○광역시경찰청장의 명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규정한다.

③ ○○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두는 지역치안협의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2008년부터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경찰 정책·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 연계, 치안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서 경찰과 협력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취지로 보임.

<조례에 근거한 현행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현황>

- ▶ **(현황)** 전국 229개 협의회(광역시 13, 기초 216)
- ▶ **(구성)** 자치단체장(의장) / 경찰(간사), 교육, 소방, 언론·시민단체 등
- ▶ **(예산)** 年 1억2,701만원을 협의회 운영비로 활용
- ▶ **(근거)** 자치단체 조례 [조례 제정 가능 자치단체(243)의 **92.6%(225) 제정**]
※ (군포시·시흥시)未제정 (제주시·서귀포시) 제주특별법 上 행정시로 규정되어 조례 제정 불가

※ 자료: 경찰청

<현행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관련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

- (서울)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4.3.20.)
제3조(기능)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경남)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5.14.)
제3조(기능)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4.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처리

※ 자료: 경찰청

<자치단체별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5. 1월 기준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남
현황	25/28 (92.9%)	26/26	9/17	10/10	11/11	6/6	5/6	5/6	1/1	20/22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황		10/10	17/19	12/12	15/16	15/15	22/23	23/23	17/19	1/1

※ 조례 未제정 지자체(2개) : 경기남부 2개(군포시, 시흥시)
※ 제주시·서귀포시의 경우, 제주특별법 상 행정市로 규정되어 조례 제정 불가

※ 자료: 경찰청

다만, 현행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광역단위 체제로, 광역단위의 지휘 감독과 기초단위의 현장 집행이라는 현행 이원화된 운영체계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치안협의회 간 위계와 권한 관계가 모호하게 되면,

중요 치안 관련 정책 사항에 있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치안협의회 간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일부 광역단위에서는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지역치안협의회를 폐지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법안 심사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참고로,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치안협의회가 법률상 기관 또는 기구로 병존할 경우 광역단위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기초단위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중심의 이원화된 자치경찰제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중심의 현행 자치경찰제 기본구조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

- 2) 경찰청에 따르면, 現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구조(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로서 광역 단위에서 지휘감독·통제권 행사가 이루어지며, 기초 단위에서는 자치단체 및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현장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따른 효과나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의 효력은 직·간접적으로 관할 시·도 내 시·군·구에도 미치게 된다는 설명임.

- ※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자치경찰 위원추천위원회(총 5명, 자치경찰위원 2명 추천)’ 구성 시
△ 기초의회의장단 협의체 △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에서 추천위원을 각 1명씩 추천함으로써
간접적 참여
- ※ 조례 폐지 지자체(16개)
- (광역단위)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남
 - (기초단위) 부산 7개(강서구, 금정구, 부산진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강원 1개(속초시), 전남 1개(순천시), 경남 2개(사천시, 통영시)